

# 『陶藝研究』 논문투고 규정

## 제1조 (총칙)

가. 이 규정은 『陶藝研究』 논문투고 규정이라 한다.

나.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인 도예연구의 투고와 관련된 절차 및 원고 작성요령, 윤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고자격과 내용)

가. 논문투고는 자유투고가 원칙이지만, 편집위원회 동의와 도예연구소 임원 회의에 따라 위촉된 자에 대해서도 투고할 수 있다.

나. 논문투고 주제의 범위는 도예연구, 도자사, 도예문화 등 도자 관련 전 분야에 걸친 학술적 내용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 인접 학문의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 ① 도예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 심포지엄 및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
- ② 연구논문, 비평논문 등

## 제3조 (투고규정의 원칙)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가. 자유투고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촉, 청탁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나. 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은 미발표된 것이어야 하며, 동일한 논문을 국내외의 다른 학술지, 저서, 저널 등에 게재할 수 없다.

다.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논문 일부를 문구 손질만 하여 논문으로 투고할 수 없다. 다만 학위논문을 재구성, 보완, 수정하여 투고할 경우, 각주 1에 이 내용을 밝힌다.

라.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으로 확인될 경우 게재를 불가한다.

마. 논문 투고자는 도예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수정, 보완 요구사항을 존중해야 한다.

바. 공동연구인 경우, 연구공헌도에 따라 저자 표기를 구분 명시한다.

사. 동일 필자는 한 호에 한 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논문투고의 간기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다.

아. 투고기일 미준수, 수정기간 지연 등으로 당 호 학회지에 게재가 어려운 경우, 필자와의 논의를 거쳐 이월 게재할 수 있다.

#### 제4조 (투고 방식)

가. 논문 작성 형식을 따라 원고를 작성한다. 이때 '논문제목(영문 포함)', '성함(영문 포함)', '소속과 직위(영문 포함)', '초록(국문, 영문)', '본문(도판, 캡션이 첨부된 논문)', '목차', '각주', '참고문헌', '주제어(국문, 영문 각 10내 이내)', '도판(표) 설명파일' -모두 hwp로 작성, '출판용 도판 원본(jpg, Zip파일)' 을 모두 작성하여 보낸다. 투고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논문투고규정」을 반드시 따른다.

나. 본문, 각주, 참고문헌 등의 작성이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편집과정에서 본 연구소의 임의로 수정할 수 있으나, 필자 스스로가 원고 재수정에 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 제5조 (논문의 분량 및 도판 매수)

가. 투고 논문의 원고는 영문초록과 참고문헌을 제외하고 200자 원고지로 환산 120매(최대 24,000자에 해당)를 상한으로 한다.

나. 도판 매수는 20매를 상한으로 하고, 도판의 이미지는 본문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의 파일로 제출한다.

다. 논문은 미발표 논제를 원칙으로 한다.

라. 필자가 게재할 논문 및 도판 등은 도예연구소 전용 메일로 각자 제출한다.

마. 정해진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은 초과 게재료를 납부한다. 단 편집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초과 분량을 허용할 수 있다.

#### 제6조 (게재료)

가. 자유 투고자는 게재료 5만원을 최종본을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본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해야 한다. 다만 연구소에서 위촉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는 게재료를 연구소

에서 부담할 수 있다.

나. 게재가 확정된 논문(자유, 위촉 모두 포함)이 정해진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 출판비용을 투고자에게 요구한다. 초과 게재료는 논문 본문의 경우(도표 포함, 참고문헌, 초록 생략),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를 초과할 시 원고지 1페이지 당 2,000원 추가하고, 도판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매수 당 5,000원을 추가한다.

● 은행계좌: 신한은행 100-028-575606 (예금주 : 이화여자대학교)

다.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 학회지 2부를 필자에게 제공한다. 논문 원본은 연구소 홈페이지와 기타 포털사이트에 공개된다. 필요시에는 필자에게 PDF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 제7조 (원고작성 형식)

### 1. 원고 작성의 세부 기준

가. 모든 원고는 한글파일(신명조체 혹은 함초롱체 권장, hwp)로 작성한다. 본문은 10포인트, 자간은 0, 행간은 160으로 한다. 각주는 9포인트, 행간은 130으로 한다.

나.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의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 )안에 漢字 또는 原語를 병기한다.

### 다. 저자표시

① 단독논문 :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표시한다.

② 공동논문 : 표시 형태는 단독 저자와 같고,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 제1저자, 공동연구자 순으로 표시한다.

라.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하고(hwp), 논문 말미에 10개 이내의 주제어를 반드시 표시한다.

### 2. 제목, 이름

필자 교정을 마친 최종본 제출 시, 논문 첫 페이지에 제목, 이름, 소속을 표기하고 영문초록에는 영문으로 된 제목, 이름, 소속을 표기한다.

소속은 구체적으로 밝히고 각주처리한다.

(예)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도자예술전공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 객원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석사과정 졸업 등

### 3. 목차

가. 제목 아래에 목차를 제시한다.

나. 장·절의 구분은 I, 1, 1), (1), 가나다순으로 한다.

#### 4. 인용문

필요하면 주에 원문 혹은 번역문을 병기한다. 인용문은 글자크기를 1포인트 줄이고, 위, 아래 한 칸 씩 띄운다.

#### 5. 도판과 표

가. 도판과 표는 본문과 함께 배열하지 않고, 별도의 문서(hwp)로 작성하거나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아래의 방식 중 택1하여 작성.

- \* 논문 원본(hwp)의 말미에 도판과 캡션을 첨부하는 방식
- \* 별도의 도판과 캡션을 단 한글파일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

나. 도판(사진, 그림, 도면 등)은 포괄하여 일련번호로 제시하되, (도 1)과 같은 식으로 붙인다.

다. 표에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 1>과 같은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라. 본문에서는 (도 1), <표 1>과 같이 지시한다.

마. 도판설명은 '(도 1) 작가(있을 경우), <작품명>, 제작연도 또는 시대, 재료, 크기, 소장처'의 순으로 표기한다.

바. 도판은 디지털데이터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각 도판은 해상도 300dpi, jpeg(jpg) 타입, 2~3MB 내외의 사양을 권장한다.

사. 도록 등 출판된 문헌의 사진을 이용할 경우 도판 설명 뒤의 괄호 안에 (저자, 책 제목, 도판 번호나 쪽수) 순으로 출처를 밝힌다.

#### 6. 주석

가. 주석은 각주로 표기한다.

나. 한국 및 동양 문헌

##### ① 저서

최공호, 『한국 근대 공예사론 : 산업과 예술의 기로에서』(미술문화, 2008), p. 130.

김윤정 외, 『한국 도자 사전』(경인문화사, 2015), pp. 59-58.

② 번역서

글렌 아담슨 저 · 임미선 등 역, 『공예로 생각하기』(미진사, 2016), pp. 101-105.

③ 학술지 논문

김혜정, 「도자 조형의 신체론적 연구」, 『도예연구』24(이화여대 도예연구소, 2015), pp. 119-120.

④ 계속되는 인용

김지혜, 앞의 책, p. 100.

위의 책, p. 150.

엄승희, 앞의 논문, p. 12.

위의 논문, p. 20.

⑤ 동일 저자의 논문(저서)을 여러 편 인용할 경우, 각 저작물의 출판연도를 ( )에 표기한다.

김미경, 앞의 논문(2015), p. 120.

최윤정, 앞의 책(2017), pp. 23-26.

다. 서양서

① 저서

Margaret Whitford, *Luce Irigaray : Philosophy in the Feminine* (Lo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p. 20.

② 번역서

Dietrich Seckel,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p. 208.

③ 학술지 논문

Elizabeth Reichert, “Nicole Cherubin’s Art Pots”, *Ceramics: Art and Perception* 77 (2009), p. 11.

④ 계속되는 인용

Whitford, 앞의 책, p. 20

Levey, 앞의 책, p. 108.

Reichert, 앞의 논문, p. 120.

7. 참고문헌

가. 참고문헌의 정렬은 사료, 한국어 문헌, 동양어 문헌, 서양어 문헌의 순서를 따르며, 동양어 문헌의 경우 한자의 한글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다. 학술지 논문과 저서, 도록 등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정렬하지 않는다.

#### 나. 한국 및 동양 문헌

##### ① 저서

엄승희, 『일제강점기 도자사 연구』, 경인문화사, 2015.

김정기 외, 『한국미술의 미의식』 정신문화문고 3, 고려원, 1984.② 번역서

글렌 아담슨 저, 임미선 등 역, 『공예로 생각하기』, 미진사, 2016.

##### ③ 학술지 논문

김지혜, 「현대도예에 나타난 촉각성」, 『도예연구』 23, 이화여대 도예연구소, 2014.

#### 다. 서양서

##### ① 저서

Whitford. Margaret, *Luce Irigaray : Philosophy in the Feminine*, Lo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 ② 번역서

Seckel. Dietrich, *The Art of Buddhism*, trans. Ann E. Keep, New York: Crown, 1964.

##### ③ 정기간행물

Reichert. Elizabeth, “Nicole Cherubin’s Art Pots”, *Ceramics: Art and Perception* 77, 2009.

### 8. 본문의 부호 및 약호

가.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 전집류 등 → 『 』

나. 논문명 → 「 」

다. 작품명 → 〈 〉

라. 전시명 → 《 》

마. 원문 인용, 대화 → “ ”

바. 강조 → ‘ ’

사. 기타 사항은 논저 저술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 9. 기타 표기

가. 문장의 서술 중 각주는 되도록 문맥이 끝나는 곳이나 그 내용이 문장 속에서 끝나는 부분에 넣도록 한다.

나. 도판이 문장의 끝에 들어갈 경우, 마침표는 도판번호 뒤에 넣는다.

다. 외국의 고유명사를 쓰는 경우는 처음 나올 때에 괄호 안에 발음을 반드시 병기한다.

## 10. 주제어 제시

가. 논문의 주요 개념이나 주제어를 본문의 맨 끝에 10단어 내외로 '한글(영문)'으로 표기한다.

나. 한국어 명칭의 로마자 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0년에 고시한 표기법에 따른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11. 국문 초록 및 영문 초록

가. 투고 논문은 국문 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분량은 원고지 7매(최대 1300자에 해당) 이내로 제한한다.

나. 영문 초록(Abstract)은 국문 초록을 기초로 하여 65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다. 초록의 원고량이 초과할 경우, 초과 원고비를 필자에게 요구한다(논문 원고비와 동일).

## 제8조 논문의 내용

연구 논문 이외에 서평, 자료집, 보고서, 답사기 등과 같은 글도 위의 논문 작성 형식에 준하여 원고를 작성한다.

## 제9조 기타

가. 필자의 자택 및 직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e-mail 주소를 원고 말미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필자의 최종 수정을 마친 논문이라도 논문투고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필자에게 논문을 재발송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다. 그 외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다. 게재 확정된 논문은 필자의 출판사 원고 교정(PDF파일)을 2회로 한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규정설정) 본 규정은 도예연구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모든 사항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6월1일부터 발효한다.

제5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9년 9월1일부터 발효한다.

제6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20년 8월1일부터 발효한다.